

경운대학교 JA(Joint Appointment)교원인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조 및 제19조, 「비전임교원임용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교원 중 Joint Appointment 교원(이하 “JA교원”이라 한다)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JA교원은 우리대학교 교원으로서 학제 간 교육, 연구 및 산업체 협력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과 또는, 기관·단체 등에 공동으로 임용된 교원으로 대학과 지역사회,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임용할 수 있다.

1. 학과-학과: 우리대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원소속 학과를 포함한 2개 이상의 학과 또는, 전공으로 임용된 교원
2. 대학-대학: 우리대학교와 타 대학에 공동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
3. 대학-기관 등: 우리대학교와 타 기관(단체, 연구소 및 산업체 등)에 공동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

제3조(임용기간) JA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원소속 학과 또는, 대학 및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임용) ① 우리대학교 재직 교원의 학과-학과 간 JA교원 임용은 원소속학과에 소속하며, 겸무학과로 겸무 인사 발령한다.

② 우리대학교 재직 교원이 대학-대학 또는, 대학-기관 등으로 타 대학 및 기관 등의 JA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, 경운대학교 「교원인사규정」 제4조의2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)에 따른다.

③ JA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하여 임용하는 ‘개방형’과, 특별초빙 절차로 임용하는 ‘협약형’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④ 타 대학이나 기관 등이 본직 기관인 JA교원은 우리대학교 학과(부) 소속이 아닌 사업단, 연구소 및 직·부속기관 등에 임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강의를 담당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개방형 임용) ① 개방형 JA교원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과에서 임용 희망 역할 및 활용계획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하여 총원신청서를 교무연구처에 제출하며, 자격, 채용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② 타 대학 및 기관 등에 공동 소속으로 임용하는 경우, 타 대학 또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총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형 임용) ① 협약형 JA교원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 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

사람 또는,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, 학과에서 임용 희망 역할 및 활용계획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하여 충원신청서를 교무연구처에 제출하며, 채용 여부 및 시행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제4조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, 연구소 및 직·부속기관 등에서 충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협약형 JA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대학교와 타 대학 또는 기관 등의 소속 기관장 간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.

③ 협약형 JA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자격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2. 본직 기관(단체, 연구소 및 산업체 등)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
3.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, 본직 기관에서 겸직허가를 받은 자
4. 채용 분야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제7조(재임용) JA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「교원인사규정」 및 「비전임교원임용 규정」 등에 따른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보수) JA교원의 보수는 경운대학교 「교직원 보수 규정」, 「교원 보수에 관한 특별 규정」 및 「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른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JA교원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운대학교 「JA(Joint Appointment)교원 운영지침」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25.10.01.>

1. **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**(경과조치)** 이 규정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JA 교원에 관한 제도, 지침, 임용 및 운영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